

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[별표 2] <개정 2005.11.21>

보급조정수당지급 및 보급산입방식

1. 보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

지급시기	지 급 액
11월	보급월액(헌법재판소규칙 제168호 부칙 제2항의 해당금액)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

2. 보급조정수당의 보급산입방식 : 전년도 보급액 $\times$ {보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
간 평균지급률 $\div$ (1+9.32/12)}